	학생원스톱서비스센터 운영규정	규정번호	3-4-24
		제정일자	2021. 3. 1.
		개정일자	2026. 3. 1.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경민대학교 학생원스톱서비스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의 업무,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설치 및 운영) 센터는 교무학생처 산하에 설치하여 운영한다.

제3조(업무) 센터의 업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(개정 2022.3.1., 2026.3.1.)

1.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업무
2. 학생자치단체 지원에 관한 업무
3. 학생자치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업무
4. 학생자치단체 간부연수에 관한 업무
5. 학교 및 학과별 각종 행사에 관한 업무
6. 학생 상벌에 관한 업무
7. 각종 집회 허가 및 각종 단체 등록 승인에 관한 업무
8. 전공동아리에 관한 업무
9. 일반(취미) 동아리 지원에 관한 업무
10. 교과 외 활동 지원
11. 학생 간행물 및 게시물 허가 관련 업무
12. 대학 총동문회에 관한 업무
13. 학생 후생복지에 관한 업무
14. 학생 및 교직원 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
15. 학생증 발급 업무
16. 졸업생 앨범 및 가운에 관한 업무
17. 학생 기타경비 책정 및 수납, 집행에 관한 업무
18.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업무
19. 학자금 대출에 관한 업무
20. 한국장학재단에 관한 업무
21. 장학금 통계보고 업무
22. 학생 등록금(수납 및 환불)에 관한 업무
23. 생활관 관원 모집 및 생활지도에 관한 업무
24. 생활관 납부금 및 중도 환불에 관한 업무
25. 응급상황에 대한 응급처치 및 보건진료 업무
26. 건강검진 프로그램 운영 업무
27. 전염병 예방 및 관리 업무
28. 학생 상해보험 및 학생활동 의료 지원 업무
29. 보건 교육 및 건강상담 활동에 관한 업무

30. 의약품구입 및 관리 업무
31. 소관 제규정의 제 · 개정 업무
32. 관련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업무
33. (삭제 2026.3.1.)
34. (삭제 2026.3.1.)
35.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업무

제4조(조직) ①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, 센터장은 센터의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.
② 센터장은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③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담당 직원을 둔다

제 2 장 위원회

제5조(위원회) ① 센터의 업무 수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.
1. 학생지도위원회
2. 장학위원회
3. 학생생활관운영위원회

② 각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
제 3 장 운 영

제6조(재정) 센터의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은 대학 예산과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.
제7조(회계연도) 센터의 회계연도는 대학의 회계연도에 준한다.
제8조(기타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